

보도시점 2024. 9. 23.(월) 15:00 배포 2024. 9. 23.(월) 10:00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24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개최

►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강화 및 조사 효율화 방안 논의, △주요 조치사례를 통한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 논의

9월 23일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4년 제2차 조심협 개요 >

- **일시/장소** : '24.9.23.(월) 14:00~15:0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 참 석 : (금융위)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 자본시장조사기획관, 법률자문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공정시장과장, 자본시장조사과장

(검 찰) 고영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금감원) 이승우 공시·조사 부원장보

(거래소) 박종식 시감위 본부장보

첫째,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 등을 점검 • 논의하였다.

불공정거래의 엄정 제재를 위해서는 시의성 있는 신속한 적발·조사·조치가 필수적인 만큼, 유관기관은 심리·조사·조치의 각 단계에서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각종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번 조심협에서는 지난 제1차 조심협에 이어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리딩방을 개설하고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증거(텔레그램방)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하여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사건에 대해서는 임시 증선위 또는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심리하고 결론짓는 증선위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집중심리제를 통하여 주요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증선위 심의의 신뢰성과 완결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3년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대부분의 후속조치가차질없이 이루어진 가운데, 실무협의체 등을 통한 유관기관간 긴밀한 정보공유가 불공정거래 대응 업무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예컨대 '23년 10월부터 금융위・금감원은 거래소 심리업무의 개선 등을 위하여거래소 심리결과 통보사건에 대한 금융당국 처리결과를 주기적(분기)으로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소는 이를 DB에 축적하고 심리요원 역량 강화 등에활용함으로써 혐의적중률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도 동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K-OTC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단계의 시장경보제도*를 도입('24.9.2.)하였다.

* (K-OTC 시장경보제도)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주가급등 종목에 대하여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단계로 경보하며,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 실시

향후에도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의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보다 견고히 구축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둘째,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조치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 공유하였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관련 증선위의 주요 조치사례 2건을 공개하였다.

사례 1은 내부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CFD*(차액결제거래)를 통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회사의 내부자거래 예방체계

구축 운영 필요성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자도 내부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경고하였다.

* Contract For Difference(차액결제거래) : 실제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

사례 2는 무자본 M&A를 통해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동사의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24.1.9일부터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추가담보 부담을 회피한 금액이 부당이득에 포함되는 등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음을 경고하였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각 기관은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치·투자자 유의사항을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향후에도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23.10월 이후 격주 개최 중)를 통해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조심협에서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1577-0088

※ [별첨 1]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 주요 현황

[별첨 2] 최근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별첨 3]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석란 (02-2100-2600)
		담당자	사무관	최민혁 (02-2100-2606)
<공동>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책임자	과 장	정현직 (02-2100-2601)
		담당자	사무관	김관범 (02-2100-2596)
<공동>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책임자	과 장	최치연 (02-2100-2680)
		담당자	사무관	이지호 (02-2100-2688)
<공동>	금융감독원 조사1국	책임자	국장代	장정훈 (02-3145-5582)
		담당자	선 임	정상혁 (02-3145-5562)
<공동>	한국거래소 심리1부	책임자	부 장	이근영 (02-3774-9140)
		담당자	팀 장	이종상 (02-3774-9142)







별첨 1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 주요 현황

1. 금융위 · 금감원

- □ 고도화·지능화되는 위법 행위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조직·인력을 충분히 보강
 - (금융위) 사건초기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및 포렌식 인력으로 조사총괄과 內 6급(임기제) 1명 증원하고,
 - 과징금 부과(신규 업무) 및 사건적체 해소를 위한 **조사인력**으로 조사과 內 5급 1명, 6급 1명 증원('24.6.25, 금융위 직제 개정)
 -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방안 발표('23.5.30, 금감원)하여,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대폭 충원(현 70명 → 95명)하고, 공매도특별
 조사단 및 특별조사팀 등 신설
- □ 중선위를 중심으로 기관간(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건 전반을 관리·협의*
 - *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실무 담당자간 실무협의체를 구성·격주 개최하여 기관간 심리·조사사항 공유 및 기타 불공정거래 이슈 논의('23.10월 이후 격주) 등

2. 거래소

- □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대한 혐의 적출 가능성을 높이도록 **혐의 적출 기준 개선하는 등**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 중·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 마련, 혐의계좌간 연계성 확인기법 다양화, 시장경보제도 개선 등 시장감시시스템 개선('23.9.25)
- □ 거래소 심리의 혐의적중률 제고를 위하여 심리결과 통보사건에 대한 **금융당국 처리결과를 정기적**(분기)으로 **피드백**받고, 피드백 사항을 반영하여 **심리시스템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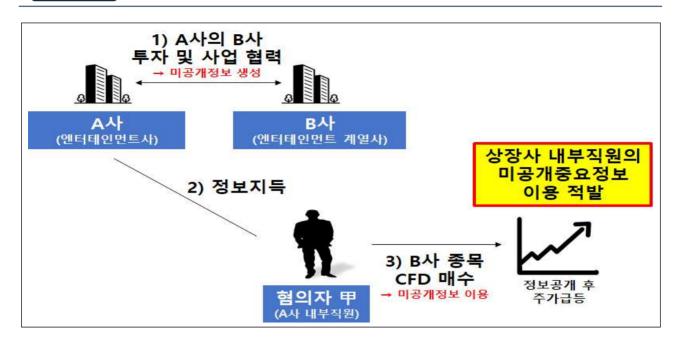
3. 금융투자협회

- □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상장사 공시 담당자 및 **증권사** 임·직원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금융당국 신고 의무화하고,
 - 조사 보안 강화를 위하여 **증권사 직원에** 대한 **조사정보 유출 금지** 의무를 마련하여 증권사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23.12.19, 「금융투자 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 □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K-OTC 시장 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제도 마련('24.9.2)

별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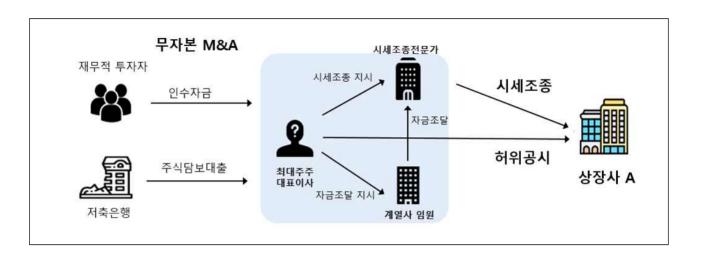
최근 주요 조치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사례 1 상장 엔터테인먼트사 내부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 A엔터테인먼트社(상장사)의 내부직원 甲은 ¹A社가 B社에 유상증자· 구주취득 등 투자 및 ²양사가 사업협력을 추진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
 - 甲은 위 미공개중요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하여 **B**社 **종목 CFD**(차액결제거래)*를 **거래**하여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 * Contract For Difference(차액결제거래) : 실제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
 - ** 매도액 : 약 5억5천만 원, 부당이득액 : 약 2억5천만 원
- □ 증권선물위원회는 甲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 ◆ (투자자 유의사항) 최근 상장회사 주요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처벌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회사는 투자자 신뢰확보를 위해 스스로 내부자 거래 근절을 위한 예방체계 구축과 유영에 힘써야 합니다.
 - 또한 **일반투자자**도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경우, 내부자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2 무자본 M&A후 시세조종 및 허위공시를 통한 주가조작



- □ 甲·乙·丙은 A社(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M&A 후 담보가액 유지 및 보유 주식을 고가 매도하고자 시세조종,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
 - ① 실질사주 甲은 A社의 주식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조달한 후 시세조종 전력자 등에게 지시하여 시세조종으로 A社의 주가를 상승시켰고,
 - ② A社의 신규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다른 상장사 B社와 공급계약을 체결 하고 그 계약규모를 과장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다시 주가를 상승시켰음
- □ 증권선물위원회는 혐의자를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하였으며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산정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 혐의자가 추가담보 납부를 회피하여 얻게 된 금융비용 절감액을 부당 이득에 처음으로 포함하였음
 - *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4]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20의2] ('24.1.9. 시행)
 - ◆ (조치의 의의) '24.1.9.부터는 추가담보 납부 회피를 통한 금융비용 절감액등 불공정거래의 동기 또는 목적이 되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부당이득에 포함*하는 등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 * 혐의자가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 등으로 주가를 관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주가가 하락하여 반대매매 상황이 발생하였을 수 있었을 것인데, 시세조종 등으로 주가를 관리함에 따라 **반대매매를 회피**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회피한 금융비용**만큼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

별첨 3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 일반적으로 '시장감시·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고발·통보(증선위) → 수사·기소(검찰) → 재판(법원)' 순으로 진행

1. 시장감시 현황 [거래소]

□ 시장경보 건수는 월평균 204건이고, 예방조치 건수는 월평균 511건 입니다('24.4월~8월).

구	분	′24.4월	′24.5월	′24.6월	′24.7월	′24.8월
시장경보	투자주의	136건	164건	209건	186건	240건
	투자경고	14건	17건	16건	13건	17건
시영영포	투자위험	1건	0건	0건	0건	5건
	소 계	151건	181건	225건	199건	262건
예방조치 (서면·유선경고 등)		486건	420건	423건	581건	646건

2. 심리 현황 [거래소]

□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월평균 약 18건의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24.4월~8월).

구 분	′24.4월	′24.5월	′24.6월	′24.7월	′24.8월
신규착수	12건	16건	10건	10건	11건
종결	8건	13건	12건	13건	12건
진행중	18건	21건	19건	16건	15건

3. 조사·조치 현황 (금융위, 금감원)

□ 금융위·금감원은 '24.8월말 현재 **225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구 분	′24.4월	'24.5월	′24.6월	′24.7월	′24.8월
조	신규 착수	17건	20건	16건	14건	5건
	종결	4건	9건	3건	21건	8건
^r	진행중	211건	222건	235건	228건	225건
	고발	-	4명, 2개사	-	20명, 1개사	2명, 2개사
	통보	1명, 2개사	74명, 6개사	-	11명, 2개사	2명
조	과징금	3명, 4개사	1명, 6개사	-	2명, 7개사	3개사
치	과태료·주의·경고	-	-	2명, 6개사	8개사	2명, 5개사
	합계	4명, 6개사	79명, 14개사	2명, 6개사	33명, 18개사	6명, 10개사